

새로운 도약! 창조경제도시 북구



양 정 동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하고 통지할 신고의무자가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◎ 아 래 ◎

1. 공고대상 : 울산 북구 양동3길 11, 이 형 동
2. 공고기간 : 2016. 10. 21. ~ 11. 04.
3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
4. 공고장소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
붙 임 161021울산북구(양정)직권조치결과공고문. 끝,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주무관 | 최은경 | 행정주무관 | 주창호 | 양정동장 | 2016. 10. 21. 서준영 |
| 협조자 | | | | | |
| 시행 | 양정동-8117 | | 접수 | | |
| 우 | 44257 |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-1, (양정동, 양정동주민센터) / http://www.bukgu.ulsan.kr/ | | | |
| 전화번호 | 052-241-8457 | 팩스번호 | 052-241-8469 | / JONAPOT30@korea.kr / 부분공개(6) | |

새로운 도약! 창조경제도시 북구